기호 12

공약순위 1: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노동중심 자주평등국가' 명시하는 '노동헌법'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노동 중심 자주평등공화국이다.'명시. 근로자 아닌 노동자로 규정하고, 모든 사람의, 노동의 권리 및 직접-무기고용, 노조 할 권리 등을 헌법에 명시

- 노동헌법 개헌
 - 헌법 32조1항 모든 사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짐, 국가는 고용안정, 적정임금, 동일가치노
 - 동 동일임금 보장 명시.
 - 헌법 32조3항 해고제한의무, 직접고용, 무기고용 원칙 명시하여 전국민 일자리 보장의
 - 근거를 만듬.
 - 헌법 33조1항 모든 사람은 노조 결성, 가입할 권리 명시
 - 。 경찰, 군인 제외 나머지 공무원 노동3권 보장
 - 。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경영권 참가 신설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모두를 위한 '전국민노 동법'

'전국민노동법'제정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을 보장. 노조할 권리, 온전한 노동3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실현

- '전국민노동법'제정 및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 임금근로자를 넘어 비임금근로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 자 등)
 -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권 보장
 -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국가가 돌봄, 생태 등 좋은 공공일자리 보장하는 '국가고용책임제'

국가가 고용을 책임지며 '기본권'으로서 일자리 보장.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획기적 확대. 헌법 제32조 1항을 모든 사

람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고용안정과 증진,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로 개정

- '국가고용보장법(가)' 제정
 - 국무총리 주재하에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 가사, 생태, 지역 차원의 공공사회서 비스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임금 삭감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 200만개 추가 창 출
 - 지역별 취업기관 활용 '일자리은행'운영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연간노동시간 1,700시간대 실현, 100만개 일자리 마련.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실현, 저출생 극복 가능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 집행
 - 법정근로시간 주 32시간, 연장근로 5시간 제한, 년 1700시간 초과 금지 노동시 간 상한제 도입.
 - 교대제, 야간노동 최소화 및 일자리 확대와 연결(100만 일자리 창출)
-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의 특례) 폐지
-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전면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 3법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강화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 중대재해 발생시 해당 법인 및 대표자에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처벌 강화, 원청 직접 책임 강화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건설안전특별법 적용하여 안전 보장함.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모두에게 안전관리 책임법으로 규정 및 위반에 대한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 。 폭염, 한파 등 재난 경보시 '작업중지권' 부여

사망 또는 중상해가 일어난 공정 또는 재해발생 사업장은 도급을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도록 강제

공약순위 2 : 모두를 위한 성평등한 나라

• 모든 형태의 혐오와 차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서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있도록 함.

• 성범죄 없는 안전한 나라 'N번방 방지법'강화 '파트너폭력 방지법'제정

오프라인 성범죄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여기는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포와 시청, 소지 등도 성적 인권 침해로 간주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발생 시 물 리적 폭력 외에도 언어.경제.심리적 영역에서의 학대와 폭력도 포괄하여 피해자 신고 성립 및 보호 조치 진행

- N번방 방지법 강화
 - 디지털성범죄 특수성 고려, 범죄자 적극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안 제시
 - 불법촬영물 공급망 해외서버 단속 및 처벌을 위한 '사이버 범죄 조약(일명 부다 페스트조약)'에 가입하여 국제공조수사 적극 활용
- 파트너 폭력방지법 제정
 - 。 폭력의 심각성 축소하는'데이트폭력'대신'파트너 폭력'으로 용어 규정
- '스토킹 처벌법' 개정
 - 。 피해자에게 위험 초래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면 개정
 - 。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체포 우선제도 도입
 - 。 피해자보호명령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결정 필요
- 안전한 임신 중지 보장과 출산을 위한 '성·재생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성과 재생산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함. 또한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 취약계층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 '채용성차별 근절' 및 '성평등임금공시제'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여성 구직자들은 노동시장의 진입단계에서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이 가로막혀 있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의 직종분리, 업무배제, 승진 누락 등 다양한 차별로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고 있음.

- 채용성차별 근절
 - 채용 시 결혼, 임신 등에 관한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을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 하는 성차별행위로 규정
 - 。 채용단계별 합격자 성비 공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채용성차별 처벌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성평등임금공시제'
 - 。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까지 의무화
 -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자료 제출 의무화 등 관련 법개정 통해 점차 확대
 - 100인 이상 기업부터 '성평등지표'평가 시행, 기준 점수 미달 시 총급여액의 1% 벌금 징수
- 결혼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생활동반자법' 제정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해야 함. 혼인.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주거.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며 사실혼, 비혼 동거 등 법률혼 이외 혼인에 대한 차별 폐지가 필요함.

- 결혼하지 않아도 살기 좋은 '생활동반자법'제정
 - 。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등 '가족'을 언급하고 있는 240여개 현행법 정비
 - 특정인 1명과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을 '생활동반자'로 규정, 법률혼과 같은 관계로 인정하고 지원정책 대상에 포함
- 고용단절 방지'바로복직제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여'바로복직제'실현
 - 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기업총 매출액의 1%벌금으로 처벌수위 상향.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특별근로감독관 배치 조항 신설

공약순위 3 : 농민기본법 제정으로 농업대혁명 자영업자 생계 전면보장 노점상도 경제적 주체 인정

• 농민기본법 제정, 식량자급률 100% 법제화 및 농민에게 농산물가격결정권 보장

코로나19, 기후위기로 식량위기가 높아짐. 특히 한국은 식량수입 5위 국가로써, 세계 곡물자 급률 평균(100.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0.2%에 머물고 있어 식량위기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해 농민의 개념을 정리하고, 농민등록제를 도입해 농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폐기, '농민기본법'제정
 - 。 식량자급률 목표 100% 법제화, 식량자급률 목표 달성을 위한 농지확보
 - 농업을 국가 미래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2년마다 계획 수립
 - 。 농산물가격 결정에 농민 참여를 기본으로 한 농민 권리보장
 - 。 농업의 공공성 강화, 국가책임농정 실현
- 농민수당 제정으로 농민수당 '월 150만원'도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4조 원을 쏟아가며 공공기관 이전 등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과밀화를 막는 데 실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짐. 사람에 대한 투자와 농어촌 지역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작동으로 농민을 500만 명으로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 나가야 함.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 대책으로 '농민수당법' 제정 매월 150만 원 지급
 - 。 농민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
 - 농업예산 5% 확보 (2022년 16조 6,767억 원으로 2.8%, 5%일 경우 30조원 예상)
 - 10년 이내에 농민 500만 명으로 확대 (2020년, 220만 명)
 - 。 농민수당 매월 150만 원 지급 예산확보
- 3000평 농지 임대 및 맞춤형 행정지원으로 '청년농민 30만 명' 양성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은 매년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 농가 인구의 76%는 50대 이상의 중 장년층, 그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 특히 청년 창업농에게 가 장 절실한 문제는 농지임. 청년농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 성장하려면 생산 기 반인 농지 마련, 문제 해결의 장 등 밑거름을 마련해야 함.

- 청년농민 30만 명 육성. 청년농민의 벗이 되는 행정으로 맞춤형 지원
 - 。 청년농민 정착지원금 일시 지원 3억 원
 - 。 3,000평 농지 무상임대 (신규 청년농부터 단계적 도입)
- 자영업자 생계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손실보상 100% 및 부채탕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타격을 입음.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이 마련 됐지만, 법 개정 전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하고, 매출 기준 80%만 인정하는 등 실효성.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할 경우 파산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고위험가구는 19만2천 가구, 가구당 부채는 3억5천만 원, 총부채 규모는 80조원 가까이 됨. 정부의 코로나19 국채 발행 및 은행의 초과이익 환수로 자영업자 부채탕감을 실시해야 함.

-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및 부채탕감
 - 손실보상법 개정. 현행 손실보상 80%를 100%로 조정. 필수고정비 반영하고,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코로나19 국채 발행 및 은행 초과이익 환수로 자영업자 부채탕감
- 불법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경제적 주체로 '노점상 생계보호특별법' 제정

노점상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불가피한 생존 수단의 한 방편임. 단속을 통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으므로 비공식부분 실체로 인정하고 권리 를 보장하는 합리적 정책 전환이 필요.

- 노점상을 사회경제적 주체로 인정하는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제정
 - 노점관리 대책, 노점상 가이드라인 등 단속과 감축 위주 노점정책을 폐기하고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및 노점상 관련 법률 정비
 - 。 당사자가 배제된 노점상 감축정책 노점상가이드라인 및 노점관리대책 중단
 - 도시 미관 재구성 위주의 전시행정사업 폐기. 다양한 상행위의 하나로 노점을 인정. 노점 생존권 보장

공약순위 4 : 일하는 청소년, 집 없는 청년, 모두를 위한 평등사회

알바도 실업급여, 취업준비생 이직준비급여 받을 수 있도록 '청년고용보험'

저소득 청년일수록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음. 저임금에 미래를 찾기 어려운 직장이라면, 청년들은 이직 외에 다른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취업준비 환경보장

- 졸업반 학생 고용보험제 도입
 - 고교 및 대학 졸업반 학생들 대상으로 국가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함.
 - 졸업후 진학자 및 취업자는 지급대상 제외, 구직자의 경우 졸업 실업급여 지급됨.
- 고용보험 개편으로 '청년이직급여'신설

기호 12

- 이직준비급여 중 청년층(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은 그 특성을 반영하여 횟수의 제한이 없는 '청년 이직준비급여'를 지급 (600일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 청년주거문제 해결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공공주택 '집사용권'

우리나라의 부채 잔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거 마련에 따른 부채 잔액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청년층이 65.1%로 가장 높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청년층과 그렇지 않은 청년층 사이의 양극화(자산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청년층부터 시작해 전국민으로 집사 용권 확대로 불평등 격차 해소. '집'을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사용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패러다임 전환

- '청년월세 10만원 상한제'
 - 무주택청년, 취업, 취업준비,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여 거주 하고자 하는 모든 청년. 공동거주를 희망하는 2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 보증금 또는 전세 보증금 이자지원, 월세지원을 통해 임대료 자부담 월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임대주택(공공기관이 건물주로부터 임대하여 기초 생활 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집사용권 제도 도입
 - 。 양도, 증여, 매매가 불가(타인 거주 불가). 이를 어길 시 최소 10년간 사용권 정 지
 - 주거면적 및 기타 환경 등을 이유로 개인이 주택을 별도로 매입하고 매입한 주 거로 이주할 경우 집사용권 상실
-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노동보호 '청소년 노동보호법"고졸노동자 지원센터'

생계형 청소년 노동의 비율이 증가추세지만 고용 안정성이 낮음. 성인 못지않게 장시간 노동, 야간노동, 노동 재해, 임금체불이 비일비재함. 고졸노동자 또한 불안정 노동으로 고통받고, 저임금.장시간 노동, 학력 차별에 시달림.

- 청소년노동보호법 제정
 - 사용자가 청소년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성과급 업무에 고용금지. 근로시간 제한(1일 7시간 주 35시간, 야간근로금지), 휴 게보장, 건강검진의 조항을 두어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보장
 - 청소년이노동과동시에미래를준비할수있도록국가와사회적책임명시. 검정고시, 수능, 자격시험 등을 준비하는 청소년에게 10일 이내의 유급 교육휴가 부여하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
- 고졸노동자 지원 센터 설립

- 정보의 불평등을 막고 고졸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 아울러 산재
 나 부당 노동행위 등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7개 권역별 (서울청, 중부청, 부산청, 대구청, 광주청, 대전청, 제주도) 설립을 우선으로 지역 실정 고려해 산하 센터 설립.
- 학생인권조례를 넘어 모두 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기본법'이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며, 기존의 법과 제도 안에서의 권리 실현만을 담고 있는 한계가 있음. 청소년인권법 제정으로 사각지대 없이 모든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청소년인권법 제정
 - 학습 시간 제한 및 자유롭게 쉴 권리 보장
 - 의사와 개성을 표현할 권리 보장 · 학교별 청소년 인권침해 규정 삭제 의무화
- 청년의 정신건강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년스트레스 센터'설립

최근 5년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등 심리 불안증상으로 진료 받은 환자 증가율 1위가 모두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신건강 증진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청년스트레스센터'건립
 - 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상담,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 청년에게 무상서비스 제공.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청년의 네트워크 활동 지원

공약순위 5 :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하고 제2의 토지개혁 실현

•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전면 추진 헌법에 자산불평등 해소와 불로소득 환수를 분명히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토지 공개념 3법'을 추진

- 택지소유상한제
 - 법인의 택지 소유 자체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에 상한선
 - 서울, 광역시의 경우 200평 이상 소유 금지(단, 5년 이상 실거주 경우 예외 300 평)
 - 。 초과소유 택지는 공공이 매입하여 공공주택으로 제공
- 토지초과이득세

-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유휴토지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률을 초 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초과이익을 환수
- 토지가격의 지역별 편차가 상이하여'지방세'로 부활하고 1천만 원 이하는 30%,
 1천만 원 초과는50%를 탄력적으로 적용.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환수제
 - 。 개발이익환수제를 제정 당시 수준인 50%까지 환수로 개정
- 20평 1억대 30평 2억대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
 - 。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므로 건설원가대로 공급
 -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전국 어디서나 30평은 2억원대, 20평은 1억원대로 공급가능.
 - 건설원가 상시 공개로 건축비 거품을 제거하면, 평당(3.3m²) 500만 원대로 품질 좋은 아 파트를 공급 가능.
 -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건설원가아파트와 장기공공임대 100%
 -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으로 원천적으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카르텔 근
 절
 - 。 건설원가아파트 연간 10만호 공급
- 고위공직자1가구1주택의무화및1가구3주택이상소유금지

집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이 재산증가 (부동산 가액변동에 따른 재산 증가가 32.2%) 1가구 3주택부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투기용 주택일 가능성이 높음.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

- 재산 공개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은 실수요 이외의 보유부동산을 백지 신 탁하도록 법률을 제개정함.
- 고위공직자부터 1가구 1주택 실현,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세 대폭 강화
-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 관련 법개정
-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별 '장기공공임대주택 20% 의무화'
 -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비율 지정(20%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화)
 - 서울, 경기도, 광역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도
 록 함

- 광역시도가 아닌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도 15~20%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의무 비율 지정
- ㅇ 자자체 등 공공기관 주택선매지역 지정을 통한 공공주택확보
- 。 공공임대주택 유형 단일화, 소득별 임대료차등제 조기도입
- 임차인 보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및 임대료 제한하는 '공정임대료'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재개정으로 모든 주거용 건물의 전월세 인상률 상시 규제하고 공정임대료. 평생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 공정임대료 제도(최초 공정임대료 산정, 매년 도시별 인상률 상한제 실시)
 - 직접 거주하지 않는 모든 임대용 주택에 대해 등록과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개별주택 공시가격제도처럼 전월세 가격도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산정. 건물주가 마음대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함.
 - 。 지역별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임대료를 결정 고시함.
- 전월세 평생계약갱신청구권제
 - 주택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1회에만 허용된 계약갱신청구 권리는 회수 제한없이 허용
- 모든 주거용 건물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 모든 임대주택은 (재)계약시 해당기간 전월세 인상률 범위내에서만 전월세 가격을 정하도록 함.
 - 임대료 인상률은 전월세가격, 물가인상률, 소득증가 등 지역별 경제여건을 감안 하여 임대료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함(시도 의회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공약순위 6 : 기후위기, 지금이 아니면 안됩니다

• 탈석탄/탈원전/탈내연으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1.5도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와 결별해야 함. 지금까지의 에너지전 환은 지역 주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진행됨. 수요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기업책임보 다 재산권이 우선시됨.

- 탈석탄/탈원전/탈내연으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자원의 확대와 핵발전 퇴출 가속화

- 국가 에너지수요가 감소세가 이뤄지도록 전력정책 재검토
- 2050년 재생에너지 100% 국가로!
 - 공영화된 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른 투자, 지원 및 행정적 대비
-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 및 2030년 온실가스 50% 감축 법제화

2029년 석탄발전소 퇴출과 모든 해외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중단 조치 시행하여 2030년 온 실가스 감축목표 2017년 대비 70%로 상향

• 신공항 건설중단 및 KTX- SRT철도 통합을 통해 '공항 대신 철도'로 기후위기 대응

수송부문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영역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탈석탄, 온실 가스 배출 감축 등의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임. 철도의 경우 대부분 전력기반 시스템으로 대표적인 저탄소 배출 교통수단이며, 세계적으로도 철도중심 공공교통시스템 구축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축으로 설정하고 있음. 항공은 시간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운송수단으로 현재 교통 분야에서 차지하는 전체 온실가스량은 크지 않으나 항공이 확대될 경우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효과를 발생시킴.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부산 가덕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새만금신공항, 울릉도 공항, 백령도 공항, 제2 제주공항 등 6곳의 신공항 건설이 추진 중임.

-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신공항 건설 재검토
- KTX- SRT철도 통합을 통해 철도 전면화로 기후위기 대응
- 철도 전면화, 항공 최소화를 원칙으로 남북철도 추진
- 녹색성장이 아닌 노동중심 산업전환 '기후정의기본법', '공동결정제도' 도입

기후위기에 산업전환이 한국에서는 기후위기의 주범인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을 위한 전환'으로 변질되고 있음. 이미 에너지 산업, 자동차 산업 등에서 고용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노동자는 완전히 배제됨. 자동차 산업의 경우 '노동없는 미래차 전환'에 따라 전기차, 자율주행, 수소차 등 구조전환이 시도됨. 이에 따라 특히 기존산업 부품업체의 줄도산과 지역사회 붕괴 위협까지 우려되는 상황. 에너지 산업 또한 정부가 나서 민간투자를 늘리며 석탄발전이퇴출되는 자리에 시장기반의 민영화로 변질되고 있음. '탈탄소만 된다면 민간이든 재벌이든 괜찮고,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하기 위해선 농지를 덮고 산림을 깎아도 좋다'는 매우 위험한시각임. 이처럼 시장에 맡겨둔 에너지전환은 이미 독일 등에서 실패한 바 있음.

- 에너지 공공성을 위한 민영발전서 공영화 및 '통합발전공기업'으로 민주적 공공소유 형태 전환.
- 조세제도 개편으로 기업 규제 및 책임 강화
 - 기후위기에 따른 전환비용은 기업의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직접세 비율을
 올리는 형태로 마련함.

- 세수의 확용은 전환과정에 기후 취약계층(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등) 보호, 공
 공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
- 노동 중심 산업전환을 위한 '기후정의기본법'제정 및 '공동결정제도', '노조법 개정'등 법안마련
 - 1.5도 제한,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법제화
 - 모든 산업전환 과정에 노동자,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보장. 일터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확립.
 - 노사 공동결정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 대책, 직업훈련 지원, 공정거래 촉진 방안 등을 수립함. 사업장 단위에서도 노동자 희생 없는 산업전환 달성.
 - 노조법 개정을 통해 기업별로 대응할 수 없는 산업별, 업종별 협약을 실현함. 사용자단체범위 확대, 교섭의제 확대, 국제기준 부합하는 파업권 보장,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기

공약순위 7 : 모두가 차별없이 함께사는 세상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돌봄 시대

• 장애인의 차별 없는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로드맵 실행과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 ·주거권·정보통신권 전면보장

탈시설 로드맵은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가 가능하도록 보장

- 모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욕구 기반이 아닌 권리 기반으로, 즉 장애인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단계적 시설폐지를 통한 자립 생활 권리보장.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거주 시설형태 등과 관계없이 '비차별'원칙 수립
- 장애인 이동권·노동권·교육권·건강권·주거권·정보통신권 전면보장
- 대학무상교육 실현과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6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취업에서도 대학 졸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대학 무상교육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부채로 안고 사회로 진출. 임금의 대부분이 학자금과 월세로 지출되며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함.

- '반값등록금' 먼저 실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으로 재원 마련
- 국공립대학부터 등록금 무상 도입으로 대학 등록금 전반적 인하 효과 기대
-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영유아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현재 유아·보육 이원화체제 청산하고 영유아교육 체제로 전환 0세~2세를 위한 '영아학교'와 3~5세를 위한 '유아학교'로 전환하여 차별없는 유아교육으로 동일한 교육서비스제공

- 0~5세 유아/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하고 완전무상교육 실현
-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유아교사 교권확보(공무직 전환)
- 110만 돌봄노동자 국가직접고용 및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코로나19는 돌봄 없이 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확인. 코로나가 만든 '돌봄 공백'은 소득 격차 . 학력 격차로 이어지며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됨. 돌봄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결

- 돌봄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보장 및 처우 개선에 기여를 위한 돌봄노동기본법 제정과 국가 직접고용 실현
 -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
 - 。 사회서비스원 직영 국공립사회복지시설 설립 및 확충
- 생애주기에 맞게 아동부터 노인까지 돌봄국가책임제 실현
 - 。 온종일 돌봄체계확대 초등돌봄사각지대 해소
 - 。 국공립보육시설 50%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
 - 아동수당 만18세까지 확대
 - 20~40대 1인 가구 맞춤형 돌봄(긴급상황 호출서비스 확대, 주거지 중심 서비스 확대)
 - 노인 돌봄체계 강화(생계급여 수급 노인 전체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인력 확대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우리나라 전체 병상 중 공공병상은 약 10% 정도에 불과,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공공병원 확대와 의료 인력을 확충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더불어 주치의제도 시행으로 의료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

-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확보
- 공공의대 확충 및 교육비 보조 등을 통한 의사 인력 확충
- 간호 인력 수급을 위한 간호사 임금과 근로 처우 개선
-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충원하는 모성정원제 실시

-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면 실시
- 초등학생부터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으로 국민의 건강권의 체계적 관리
- 동물권·채식권 전면 보장

그동안 동물에게 자행되었던 비윤리적 행위들을 줄여나가고 동물과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기후 위기와 감염병 위기에서 인간과 동물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함.

-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를 위한 펫샵 폐지와 진료수가 표준화
- 공장식 축산 모라토리엄 선언 및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

공약순위 8 : 부자에게 세금을! 재벌해체로 경제민주화 실현

상위 0.1% 자산 100억 이상 자산가(슈퍼리치)에게 '부유세' 부과로 불평등 해소 재원 마련

자산불평등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상위 0.1% 자산가에게 '부유세'를 부과하여 서민들의 교육 의료 등 재원으로 사용해야 함

- 상위 0.1% 금융자산 100억 이상에게는 2%, 상위 0.01%인 금융자산 300억 이상은 3%를 부과하여 연간 46조 원 가량의 재원 확보
 - 확보된 재원은 대학무상교육(10조 3000억) 실현 및 살기 좋은 공공임대주택 및 20평 1억대 건설원가아파트 공급(22조), 돌봄노동자 적정임금으로 국가직접고 용(3조),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10조) 등 사회보장 강화
- 고용위기 기간산업 국유화 및 산업은행 개혁

각국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등 사회.환경적으로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간산업을 국가가 관리 통제하는 것은 전략적 산업정책 목표를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기간산업 매각 전문이 아닌 공적통제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국가지주회사로 기능을 전환해야 함.

- 기간산업을 소수의 재벌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지배하는 산업구조로 질서 재편
- 산업은행 구조조정 목적과 방식을 고용을 비롯한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조조정으로 전환
 - 항공, 조선 등 고용위기 기간산업부터 국유화 실시
 - 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에 '고용의 안정.촉진'을 규정
 - 산업은행의 구조조정 기준의 변경 : 고용중심의, 생산의 사회적,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구조조정의 목적과 방식 변경

- 산업은행을 기간산업을 관리하는 국가지주회사로 전환, 국가지주회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
- 노동자, 지역 등 이해관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공동위원회 구성
-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갑질 방지와 독점규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급증함.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 수수료 부담 반영의 제품가격 인상, 소비자 분쟁 등 다양한 부작용과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과 상생을 위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맞는 거래질서 구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및 갑질 문제 근절 대책이 필요함.

-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점규제법 제정
-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 。 일방적인 해지 등 부당 거래거절의 규제
 -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 。 이용사업자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 。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상권, 단체교섭권 부여
- 경제 양극화해소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도입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의 경제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임.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 조와 불공정행위는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용역 하도급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음.
 - '초과이익공유제' 도입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 '초과이익공유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 。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 '납품단가 연동제'
 - 중소기업.납품업체들의 집단교섭 보장 및 하도급법 개정
 - 재벌 사내유보금 사회적 환수

IMF 외환위기 후 재벌에 대한 과세제도 폐지 시행된 2002년부터 기업 사내유보금이 급증하여 2019년 기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957조에 이르게 됨. 같은 기간 가계소득 분배율이 8% 정도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분배율은 8% 증대함. 재벌 사내유보금은 비정규불안정 노동에 대한 이윤착취구조의 문제임.

- 재벌 사내유보금을 사회적으로 환수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환수된 사내유보금은 비정규직, 장애인고용, 최저임금인상 지원, 청년실업 해소 등 비정규 불안정 노동을 위한 '노동자기금'으로 적립

공약순위 9: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직접민주주의,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실현

- 국회의원 '수당 최저임금 3배 이하, 3선 연임 제한, 1가구 1주택 의무화'로 특권 폐지 국회의원의 특권영위로 인해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높은 보수는 국회를 불신하는 원인 중의 하나이며, 일하지 않고 꼬박꼬박 세비를 챙기거나 '셀프 인상'을 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온 바 적정한 국회의원 수당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할 시점임. 국회의원 또한 사조직 과 파벌문제,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므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을 도입하여 공직 사회를 개혁하고자 함.
 - '최저임금 3배 이하'로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제2조)
 -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공직선거법 개정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확립 및 투기 방지
 -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발안 3대 직접민주주의 제도 강화

국민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투표 부의권'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도' 도입이 필요함.

- 국민에게 '국민투표 부여권' 도입
 - 국회 과반이 찬성하거나 국민 10% 이상이 발의에 참여해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은 국민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국민이 법률 및 헌법을 발안하는 '국민발안제' 도입
 - 유권자 50만명 서명으로 개헌발안. 공고3개월 이내 국민투표 회부, 국회의원 선 거권자 과반수와 과반수 찬성 확정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 지역구 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는 지역구 선거권자 15% 이상 동의
 - 비례대표 국회의원 소환투표 발의는 전국 선거권자 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15% 이상 동의
- 위성정당 방지 추가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 후보 공천 금지

지난 20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위성정당'으로 애초 취지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함. 본래 취지에 맞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위성정당 방지 조항을 추가하여 연동형 비례대표제 왜곡을 차단함.

- 위성정당 방지 추가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완전한 연동현 비례대표제)도입
 - 국회의 의원정수를 400인으로 하되 비례대표와 지역구선출 국회의원의 비율을 1:1로함. (제21조의 항 신설)
 -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연동형 100%를 적용한다.(제189조 개정) 현행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기준인 100분의 3이상을 폐지하고 의석수 배분을 1/N로 하도록 함.(제189조 개정)
- 위성정당 방지 조항 추가
 -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은 반드시 비례 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비례명부 미제 출시 지역구 후보 등록은 불가하도록 함.(신설)
- 광역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기초의회는 3~5인 중선거구로 확대

정당지지율에 비해 거대 양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져가는 현상은 기초의회에서 마찬가지임. 현행 기초의원 선거에서 다양한 정치세력의 입성을 도모하기 위해 1개 지역구에서 2~4명을 뽑는 '중대선거제'를 실시하지만 애초 취지가 무력화되어 있는 상황임.

- 현행 2~4인까지 뽑는 제도를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
-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중을 현행 13%에서 50%로 확대하고 의원정수 확대
- 선거구 분할 허용 조항 폐지 및 '공직선거법' 개정
- 선거권 피선거권 16세 하향, 청년 기탁금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로 청년정치 참여 확대

청년·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함. 현행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고, 당선, 사망 또는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반환하고 있음. 청년후 보자의 기탁 금액을 하향하고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고 공직선거에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 당에 청년추천보조금을 배분함으로써 각 정당의 청년후보자 추천을 독려하고, 청년의 적극 적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만 16세로 인하: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16조(피선 거권) 개정, 헌법 제67조 개정
- 정당가입 연령 제한 폐지: 정당법 제22조 개정
- 청년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금액의 50%로 하향함.
- 청년추천보조금 신설로 청년 정치참여 확대

공약순위 10: 한반도 평화번영통일 시대

• 한미연합훈련 중단 및 국가보안법 폐지

전쟁이 중단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모든 공격을 중지하고, 군사의 철군 및 기지의 철거가 동반되어 진행되어야 함. 한반도 긴강 고조의 하나의 원인이며 군사적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필요함. 적대관계의 대표적인 반통일 법체계로는 국가보안법이 있으며, 현행 헌법 제3조(영토조항), 제4조(통일원칙) 등의 폐지 및 개정이 필요함.

- 한미연합군사훈련 영구 중단
-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 계획 계획 발표
- 전시작전통제권 즉시 환수
- 사드 철거
- 국가보안법 폐지
-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으로 전환

아직까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한국 전쟁의 완전한 종결을 선언하고 신뢰 회복과 화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이 필요함. 비정상적인 정전상태를 완전히 종식하고 한반도에 드리워져 있던 냉전과 분단구조를 깨끗이 걷어 냄으로써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토대 마련

-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 9급 공무원 초봉 급여로 2024년까지 모병제 전환

지속적인인구감소로인한징집대상부족상황. 징집 군 복무인원을 27만 명 선으로 감축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2025년 8천명, 2039년 8만 7천명 부족 예상. 평화와 군축을 위해 모병제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됨.

- 20만 병력 감축 및 모병제 전면 전환
 - 상비병력 20만 명으로 단계적 감축(전체 인구의 0.4% 수준)
 - 2022~23년 징모혼합제 운영, 2024년 지원병제 전면 도입
 - 복무기간 12개월로 단축
- 9급 공무원 초봉 급여 책정
 - 。 고위급 장성 감축 군 구조의 개선
 - 2020년 병 인건비 2조원 대비 1.5배 수준으로 인상되나, 간부 인건비 감소분을 감안하면 2020년 인건비 기준으로 30% 예산 감축 효과

• 병력 20만으로 군축과 국방비 축소로 복지예산 확대

현재 한국의 국방분야는 과도한 군비와 과다한 병력, 불요불급한 해외 무기 구입 등 모든 분야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한의 선제적 군비축소로 남북 상호 군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함.

- 병력 20만으로 선제적 군축
- 과도한 국방예산 동결과 축소로 복지 예산 확충
 - 해외 무기 도입 사업 중단
 - 。 비인도적 무기의 도입 및 개발 중단
- 국방안보 전략 변화, 민간 국방장관 임명
- GDP 대비 1.3% 군비축소, 인구대비 0.4% 병력규모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전면 재개 및 우주분야까지 남북과학기술협력시대 개막

정치, 군사 분야는 분단 체제를 허물고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것이라면, 경제 분야는 통일 국가의 물적 토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남북 경협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 번영 추구. 우주 개발 영역은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분야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우주 과학을 국가중점과학 분야로 내세우고 있음. 북한은 독자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및 인공위성 발사 성공. 북한은 2016년 제2차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 하면서 2020년 12월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소개하고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동하기로 함. 남북과학기술협력으로 남북우주과학시대 개막 가능

-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남북 정부의 제도적 보장
 - 。 동해안 남북 연계 관광특구 추진
- '남북 경협 재개 남북 경협 재설정 남북 경협 전면화'의 3단계 추진
- 남북 합동 우주 개발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조선우주협회' 공식 합동 프로젝트 진행